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

제정 2020. 1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,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(이하 "후원명칭"이라 한다)"이란 대회, 시상식, 박람회, 세미나, 포럼 등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칭,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소관부서"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홍보부서"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홍보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는(이하 "행사"라 한다)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(공공기관 포함)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지원 요청이 있는 행사
 - 2.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
 - 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제6조의 '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'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행사
- 제4조(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)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인터넷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1.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행사계획서
 - 3.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
 - 4. 기관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
 - 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 - ②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 중 전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행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

수 있다. 다만, 후원명칭을 사용할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소관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,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홍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용승인 검토 및 승인) ① 홍보부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확인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 - ② 신청한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 - 1. 행사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정치적 목적, 영리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
 - 3.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, 설립목적, 행사의 후원기관(단체),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행사주최 단체가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
 - 4. 행사목적, 행사내용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당 행사를 후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
 - 5.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
 - 6. 그 밖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행사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
 - 7.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
 - ③ 소관부서는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의 사용기간, 사용범위, 결과보고 기한 등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「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」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연례행사의 경우 승인사항의 특별한 변경이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
- 제6조(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)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
 - 2.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홍보부서의 장이 되고, 위원은 각 본부의 선임팀장과 감사팀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고,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취소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의·의결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부서의 담당자로 하며,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·관리한다.
- 제7조(결과보고 등)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소관부서는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, 안전사고 유무 등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으로부터 변경사항 등 결과를 행사종료 30일 이내에 보고받아야 하며,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홍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소관부서는 사용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8조(기록의 유지 및 관리)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소관부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홍보부서는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취합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승인취소 등) ① 심사위원회는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사항 취소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③ 심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<2020. 1. 31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

		후원	명칭	사용	용승인 1	신청	서			
신청기관	명칭				전화			FAX		
	대표자				전화			E-mail		
	소재지(우편반	선호포함)								
	행사명									
	요청사유									
	행사목적									
	주요행사내 용									
	행사주최									
	행사주관									
행사개요	타후원예정 기관명									
	행사일시		년	월	일부터		년	월	일까지	
	후원명칭 사용기간		년	월	일부터		년	월	일까지	
	행사장소									
	참석대상 및 인원	대상 :	명			인원	•	명(추정)		
위 행사에 대한 귀 기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년 월 일 -										
신청인 (기관명)						대표자			(직인)	
첨부 서류	1. 행사계획서(신 한 구체적인	!청서상에 기기 내용을 반영하	대된 내용 ^고 나여 주시고	과 참가자: 1, 검토에	의 참가조건, ' 필요한 자료/	입장료, 가 있는	물품판매 경우에는	여부, 행사 ' 첨부시켜 주	안전대책 등 시기 바랍니	등에 관 니다) 1
	부. 2. 기관 또는 단: 3. 기관의 설립하 4. 그 밖에 필요:	가 또는 등록	류증 사본 1	1부.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승인 검토의견서

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승인 검토의견서

담당부서		부서장 (담당자)						
□ 행사개요 (※접수부서 작성)								
행사명								
행사목적								
행사주최								
행사주관								
사용기간								
사용장소								
후원내역	※ 기존 후원명칭 승인 니	내역, 후원명칭 이외의 후원	! 및 협찬 사항 등					
검토의견								
승인의견 (허가 또는 불허)		검토일시	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

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승인서									
승인된	로서 번호	20xx−xxxx호							
주최 기관	기 관 명								
	소 재 지								
	대 표 자	성 명							
	연 락 처	전 화			팩 스				
승인사항 및 승인조건									
	행사명								
승인	행사일시			행사장	당소				
사항	주요 행사내용			·	·				
	사용명칭	한국	한국인터넷진흥원 명의의 후원명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						
승인 조건	금지·제한 행위	- 허위·과장홍보 금지 -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금지 - 특정 물품구입 요구 금지 - 추가 금지·제한사항1)							
	승인사항 변경보고	-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한 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							
	개최결과 보고	 승인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, 안전사고 유무 등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사종료 30일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행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일시, 장소, 참석인원, 주요 참석인사, 포상 및 시상내역, 안전사고 유무,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							
	유의사항	-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,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							
귀 기관(법인·단체)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조건을 붙여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(직인) ○○○기관(법인·단체) 귀중									

[별지 제4호 서식]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

한국인터넷진흥원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

일련 번호	승인	소관 부서명		문서번호			
	일자		행사명	기관·단체	장소	행사기간	(일자)